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6
----------	-----

2019년 2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21일, 박순규 의원 (찬성자 18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1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2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순규 의원)

가. 제안이유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가 정당하게 보상하고 소방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수행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2)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손실을 보상토록 함. (안 제3조)
- 3)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산으로 기록·보관토록 함. (안 제4조)
- 4)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
- 5)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그 처리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6) 시장에게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위원장 선출 방법 및 임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해임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1조)
- 7)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정당한 대응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2017.12.26)」 및 동법 시행령(2018.8.7.)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현행조례”라 한다)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현행 물적손실 뿐만 아니라 인적손실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임.

[표 1] 조례안 주요골자

조 문 별	주요 골자
안 제1조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소방활동을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재난·재해 그 밖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일련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소방기관, 소방대, 청구인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3조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보관토록 함.
안 제5조	시장에게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6조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조~제11조	시장에게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위원장 선출 방법 및 임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해임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정취지에 대한 의견

- 2017.3.23.일 공포·시행된 현행조례의 제정취지가 당시 운용 중이던 소방공무원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제도가 구조·구급의 경우만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그 밖의 화재 등의 재난활동에서는 구체적인 보상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했던 현행조례에 대해 지난 1년 여간 시행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이를 법령으로 수용하면서 물적 및 인적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¹⁾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2017.12.26.)을 단행함에 따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새로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현행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재난현장에서 타인의 물적·인적 손실에 개입치 않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에 따른 물적·인적 손실을 입은 피해시민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음.

1)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3건이 발생하였고 총 보상요구액이 4천여만 원 정도인데([표 2]참조), 이 중 76건은 손실당사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현행조례 시행 전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하여 해결하였으며, 12건은 소방공무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한 것으로 파악됨.

[표 2] 최근 3년간 소방활동 손실보상 발생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천원)

연도	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3	43,587	80	16,778	37	17,951	6	8,858		
2018	78	23,348	51	13,523	23	1,565	4	8,260		
2017	18	4,643	11	3,255	6	790	1	598		
2016	27	15,596	18	0	8	15,596	1	0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소방활동’, ‘소방기관’, ‘소방대’, ‘청구인’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소방활동’의 경우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관’과 ‘소방

대'는 「소방공무원임용령」 2) 및 「소방기본법」 3)에 따른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인' 정의에 인적손실이 추가된 것이 현행조례와 차별화됨.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4조4)에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4. 생략

3)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생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하며,

- 현행 조례에서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물적손실에 대하여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본 조례안의 경우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인적손실에 대하여 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소방공무원들의 대응활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음.

[표 3] 현행 및 본 조례안 조문대비표(안 제3조)

현 행	본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 -----.

다. 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음.
- 현행조례가 기록의 주체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부여하고 물적손실에 대하여만 기록·보관토록 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사실조사와 기록의 주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물적 및 인적 손실 모두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을 기록·보관토록 함으로써 책임성과 기록관리 대

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을 크게 제고했다는 점이 특징임.

[표 4] 현행 및 본 조례안 조문대비표(안 제4조)

현 행	본 조례안
제4조(기록유지)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손실보상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토록 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서를 통해 관계법령의 위반에 의한 손실은 제외토록 하고 있음.

[표 5] 현행 및 본 조례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

현 행	본 조례안
제5조(손실보상)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처분

현 행	본 조례안
<p><u>경우</u></p> <p><u>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u></p> <p>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p> <p>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u>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u></p> <p><u>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u></p> <p>5. -----</p> <p>6. -----</p> <p><u>7. 그 밖에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u></p>

- 이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소방활동 및 구조·구급활동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한 것으로,
- 현행조례와 비교하여 추가 혹은 변경된 사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호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포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안 제5조제2호)⁵⁾와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대상물과 토지 등의 강

5)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처분(안 제5조제3호)⁶⁾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면서,

- 그 밖에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안 제5조제7호)도 포함토록 하여 특이사례로 인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음.
- 다음으로 안 제5조제3호에서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과 단서의 예외 규정을 명시한 것은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자칫 과잉대응하거나 위법한 손실보상 요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하겠음.

마. 청구방법 및 처리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청구기간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2항은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여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손실보상 결정을 위

② ~ ③ 생략

6)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 ⑤ 생략

한 소요기간의 탄력성을 기하고 있음.

- 안 제6조제3항의 청구권리 소멸기한의 경우, 현행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49조의27)에 따라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다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 안 제6조제4항은 현행 조례에 없던 신설규정으로 손실보상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비교적 소액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 안 제7조는,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7)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 ④ 생략

- 보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 선임기준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혹은 소방령,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손해사정사, 소방안전 또는 의학분야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경찰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8))을 일부 준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을 통해 손실보상 유형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여겨짐.

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해임 (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보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 8)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할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심의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심의안건 청구법인의 임원인 경우 등에 해당할 시에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있으며,

- 청구인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위원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보상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스스로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소송지원(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입혀 의도치 않게 소송당사자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적인 근무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음.

자. 경과조치 등(부칙)

- 본 조례안 부칙 안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과 함께,
- 부칙 안제3조에서는 현행 조례(제6459호)의 폐지를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현행 조례와의 충돌방지와 종전에 이루어진 관련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음.

차. 기타 수정의견

- 안 제9조제4항에 “그 밖의 보상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안 제16조(시행세칙)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조례가 상위기관인 소방청으로 하여금 훈령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의 의도는 소방청 훈령을 준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소방청 훈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통일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6]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본 조례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③ 생략 ④ 그 밖의 보상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u>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③(본 조례안과 같음) ④ ----- -- <u>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u>
제16조(시행세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에 의한다.</u>	제16조(시행세칙) <u>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u>

4. 질의 및 답변 요지 :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조제1호의 소방활동에 대한 용어정의를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한편, 조례가 상위기관인 소방청으로 하여금 훈령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의 의도는 소방청 훈령을 준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안 제9조제4항에 “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를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로 안 제16조(시행세칙)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에 의한다.”는 “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6
----------	-----------

제안일자 : 2019년 2월 27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2조제1호의 소방활동에 대한 용어정의를 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방활동의 정의와 통일시켜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조례가 상위기관인 소방청으로 하여금 훈령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의 의도는 소방청 훈령을 준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를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소방활동에 대한 용어정의를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로 수정함. (안 제2조제1항)
- 법체계에 맞도록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고 수정함. (안 제9조제4항, 안 제16조)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안 제9조제4항 중 “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를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로 하고,

안 제16조 중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에 의한다.”는 “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본 조례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소방활동"이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u> <u>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u></p> <p>2. (생략)</p> <p>3. "소방대"란 <u>「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u>의 소방대를 말한다.</p>	<p>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u></p> <p>2. (조례안과 같음)</p> <p>3. ----- <u>법 제2조제5호</u>----- -----.</p>
<p>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③ 생략</p> <p>④ 그 밖의 보상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u></p>	<p>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③(조례안과 같음)</p> <p>④ ----- --<u>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u></p>
<p>제16조(시행세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에 의한다.</u></p>	<p>제16조(시행세칙) <u>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u></p>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

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7. 그 밖에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

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60일 이내에 제7조의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④ 본부장은 손실보상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청구인의 청구서를 토대로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 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본부장의 손실보상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중에서 보상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의 보상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 2. 위원이 심의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심의안건의 청구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시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소송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손실보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5조(위원수당 등) 보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조례 제6459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